

[]등록
가축거래상인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신고서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뒤쪽의 등록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 (신고) 내용	⑤ 고유번호	
	⑥ 거래가축의 종류	
	⑦ 가축 거래지역	
	⑧ 가축운반 차량 번호	

⑨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 일자 및 사유

⑩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

⑪ 등록증 분실사유

「축산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1부 2. 「축산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교육을 면제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1부(휴업,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⑥란에는 소(젖소 포함), 돼지, 닭, 오리 중 실제 거래하는 모든 가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 ⑦란에는 신청인이 주로 활동하는 가축 거래지역을 시·군·구까지 적습니다.
- ⑧란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번호를 적습니다(가축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⑩란에는 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의 경우만 적습니다.

